

제2경춘(남양주 ~ 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0. 12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국도46호선 남양주~춘천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기존국도 기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 및 지역개발촉진을 유도하고 전국 차원의 균등한 간선도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1.2 계획의 개요

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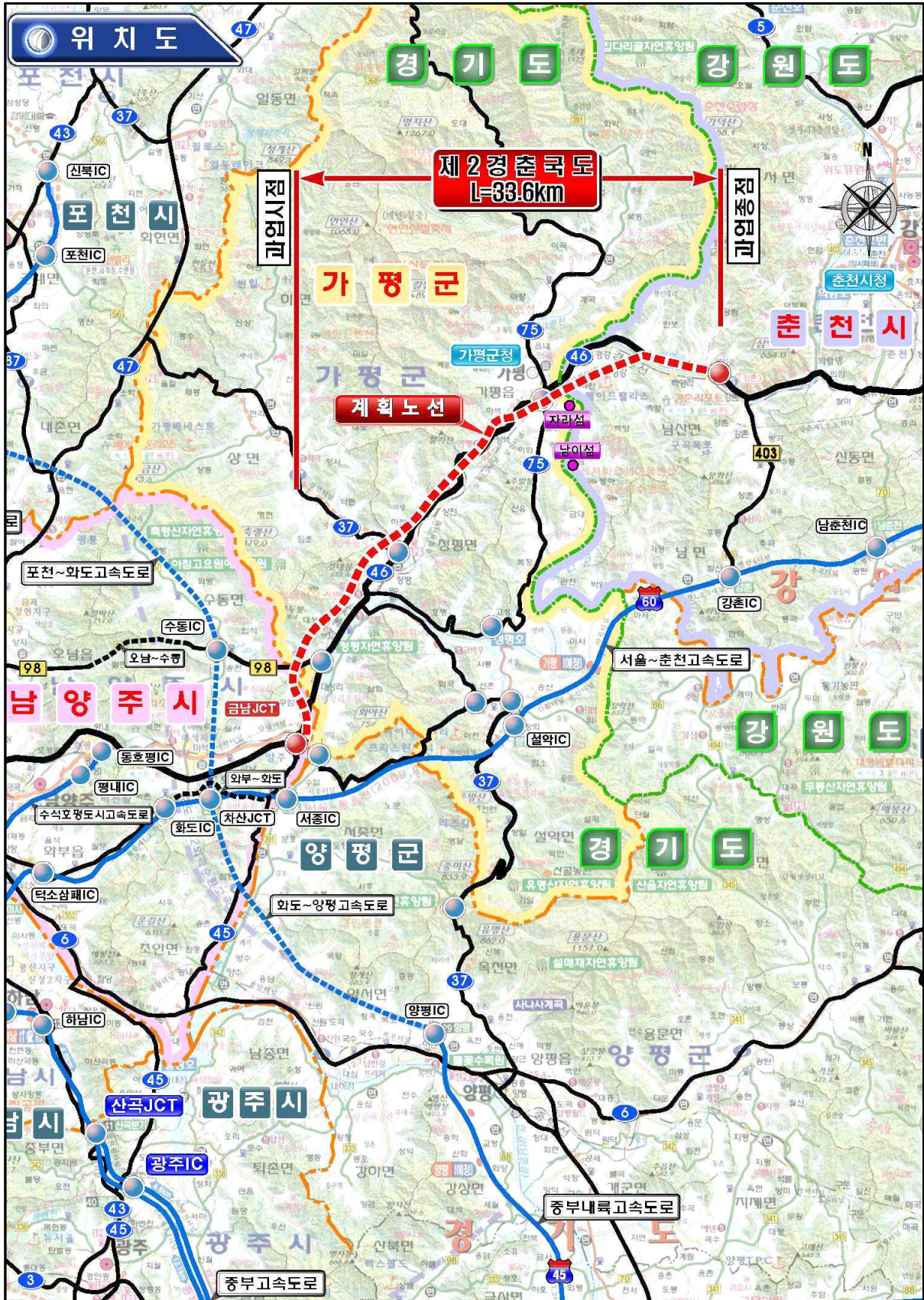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별표2]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2. 개발 기본계획 「마. 도로의 건설」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후 「환경영향평가법」 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추진하는 계획임

〈표 1.2-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금회
환경영향평가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 -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향후 시행예정

나.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일원
- 연 장 : 33.6km(B=20.0m, 왕복 4차로)
- 도로의 등급 : 지방지역 주간선도로
- 설계속도 : 80km/h
- 계획수립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계획의 종류 : 도로의 건설



(그림 1.2-1) 계획노선 위치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획수립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3인(환경청,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0. 11. 02 ~ 11. 27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대상지역 설정(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 본 개발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므로 입지분석과 개발에 따른 영향 및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대상지역 설정은 「계획유형별 평가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가이드라인, 2009,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약취·소음·진동), 201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18.12.12, 환경부고시 제 2018-205호」를 참고하여 영향권을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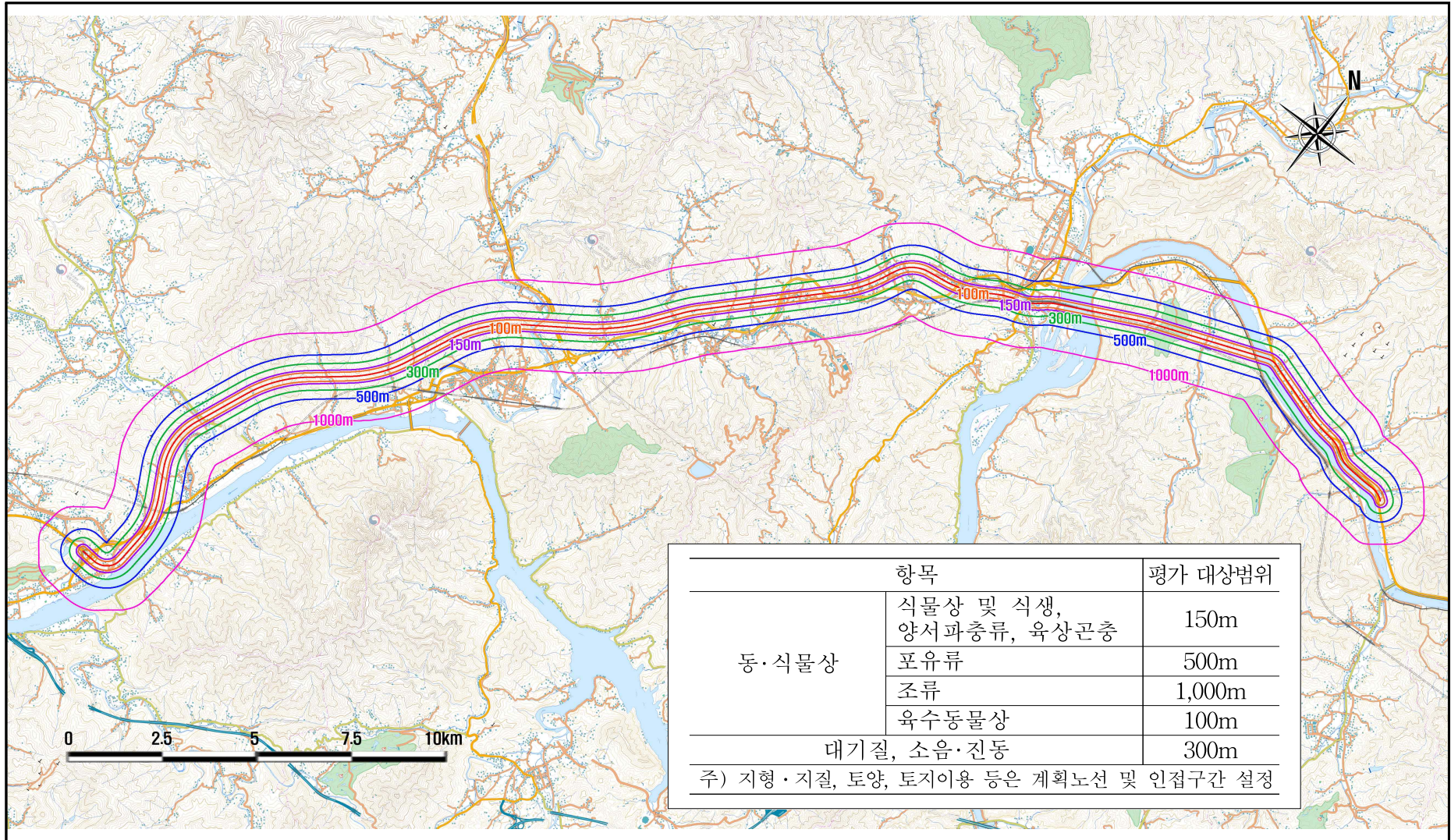
〈표 2.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 목		평가 대상지역 설정	설정 사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광역조사 : 계획노선 중심 좌·우 1km 이내 - 현지조사(계획노선 중심 좌·우) • 식물상 및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150m 이내 • 포유류 : 500m 이내 • 조류 : 1,000m 이내 • 육수동물상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상·하류 100m	○ 계획시행시 동·식물의 자연환경과 서식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 자산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본 계획노선 주변 자연환경자산 분포 여부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위락 및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 보전	수질 (수리·수문)	○ 계획노선 주변하천	○ 수질 및 수리·수문변화가 예상되는 수계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표 2.2.1-1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 목		평가 대상지역 설정		설정 사유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계획노선 인접 기상대	○ 대기질 기초자료 활용	
		대기질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반경 300m 이내	○ 공사시 토사 운반차량 및 작업장비 가동에 따라 발생되는 비산먼지 등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토양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토양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진동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반경 300m 이내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운영시 유발교통량에 의해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일조장해	○ 계획노선의 교량부 또는 성토부 등 으로 인한 일조장해 영향예상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예상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생활폐기물, 분뇨, 건설폐기물, 장비 폐유발생 등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온실가스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발생 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토지편입 및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인구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구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산업			○ 계획노선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그림 2.2.1-1) 대상지역 설정도

2.2.2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의 선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금회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함

〈표 2.2.2-1〉 평가항목 선정 안(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선정구분			선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제외		
계획의 적정성		○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 검토	
입지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	-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 예상 ○계획시행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와 생물다양성 변화가 예상 ○각종 보호생물종의 영향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	-	○지형·지질 변화와 생태축 단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
		수환경의 보전	○	-	-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수계의 영향 예상 ○계획시행으로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예상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시 대기질 배출 변화,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진동 영향 등이 예상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	○	-	○계획시행시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	-	○계획시행시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	○계획시행시 토지이용변화 발생 예상 ○계획시행시 인구·주거환경상의 변화가 예상
		인구	-	○	-	○계획시행으로 인구의 변화가 예상
		산업	-	○	-	○계획시행으로 산업의 변화가 예상

2) 환경영향평가

- 평가항목의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 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을 참고하고,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함

〈표 2.2.2-1〉 평가항목 선정 안(환경영향평가)

구분		평가항목			선정(미포함) 사유
		중점	일반	제외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식생훼손 정도 및 이식수목 파악, 공사시 육상동물상 변화, 주요종(법정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등)서식여부 및 보전대책
	자연환경자산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
대기 환경	기상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기상대자료)
	대기질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건설기계투입에 따른 오염물질발생 ○운영시 차량운행으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이용차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악취	-	-	○	○악취유발시설 없음
수 환경	수질	○	-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으로 인한 주변수계 영향 검토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운영시 비점오염원 발생
	수리·수문	○	-	-	○계획 시행으로 인한 수리변화 및 수로단절 영향 및 대책
	해양환경	-	-	○	○계획의 특성 및 입지여건상 해양에 미치는 영향 없음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 양	○	-	-	○계획노선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 및 공사시 건설기계 발생 폐유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지형·지질	○	-	-	○토공구간의 절·성토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소음·진동	○	-	-	○공사시 건설기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소음·진동영향
	위락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경관	○	-	-	○절·성토 및 구조물설치 등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
	위생·공중보건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 검토
	전파장해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인구현황 및 영향 파악
	주거	-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산업	-	○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산업 영향 파악

나. 평가범위 및 방법

- 계획노선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의 특성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시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지역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을 고려하여 평가범위로 설정하였으며,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2-2〉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자연 생태 환경	① 조사내용 ○ 식물상 현황 : 식물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 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중분포 및 서식현황 ○ 담수생물상 현황 : 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중분포 및 서식 현황 ○ 특이할만한 중분포 및 서식현황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중심선)으로부터 좌우 100~500m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중심선으로 부터 좌우) ○ 계획노선 내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 100m ○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 곤충 : 150m ○ 포유류 : 500m ○ 조류 : 1,000m (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환경영향평가지 2회)	○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 종과 개체에 대한영향, 훼손수목 발생 및 예측 ○ 동물상 : 분류군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 담수생물상 : 하천점유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파악과 계획 시행으로 이들 중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 계획노선 중심선으로 부터 좌우 100m~1,000m 이내
	자연 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조사 :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표 2.2.2-2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대 기 환 경	기상	① 조사내용 ○ 계획노선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인근 기상대(춘천기상대) 자료 활용 ③ 조사방법 ○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 기상연보 ○ 기상대 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대기질	① 조사내용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현황 오염원(면·선·점) 파악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반경 3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9개 지점 × 4회 (3일) (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환경영향평가지 2회)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 CALINE3 등의 확산모델 이용	○ 계획노선 반경 300m 이내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온실가스 배출현황,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현황 ② 조사범위 ○ 온실가스 변화가 예상되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정리	○ 공사시 건설기계 가동 및 운영시 이용차량 산정후 IPCC 배출계수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수 환 경	수질 (수리·수문)	① 조사내용 ○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인근 하천 등 수계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 : 9개 지점 × 4회 ○ 지하수 : 9개 지점 × 4회 (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환경영향평가지 2회)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재해(홍수 등) 영향 검토 ○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부하량 예측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표 2.2.2-2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토 지 환 경	토지 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 이용변화 파악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 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9개 지점 × 4회 (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환경영향 평가지 2회)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지형 · 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사면 안정성 검토, 연약지반 검토 ○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 발생, 사면안정성 등
생활 환경	친환 경적 자원 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조사	○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중별,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표 2.2.2-2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생활 환경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 정온시설을 포함한 계획노선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반경 300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소음 : 9개 지점 × 4회 ○ 진동 : 9개 지점 × 4회 (전략환경영향평가지 2회, 환경영향평가지 2회)	○ 공사시 건설기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 운영시 이용차량에 따른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소음 영향예측	○ 계획노선 반경 300m 이내
	① 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 (근경·중경·원경)	○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 조망점별 경관시물레이션 실시 ○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① 조사내용 ○ 계획노선 주변 일조장해 예상지역 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등	○ 현지조사 및 계획도면 검토 ○ 계획노선으로 인한 일조장해 검토	
사회 경제 환경	① 조사내용 ○ 인구 현황 파악, 장래 변화예측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변화 예측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① 조사내용 ○ 산업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관련 계획에 따른 산업 변화 예측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2.2.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본 평가준비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개하여, 14일 이상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
- 또한,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반영토록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임
-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이 불가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의견수렴 주체 : 사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표 2.2.3-1〉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용
공고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 홈페이지) : 공고·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위치하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공람장소는 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 각 1개소 이상 설치)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나. 환경영향평가

-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표 2.2.3-2〉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실시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항목을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결정내용 공개는 생략할 예정임

2)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의견수렴 주체 : 사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표 2.2.3-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공고내용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 홈페이지)
: 공고·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6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위치하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공람장소는 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 각 1개소 이상 설치)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 ‘주민 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나)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 가평군, 춘천시와 설명회 개최 장소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2.3 심의 의견서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박○○(계획수립기관)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안 건 명 :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심의의견서

1. 대상지역 및 대안의 설정

- 대상지역설정은 적정하게 설정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정온시설을 면밀히 파악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제시
- 계획구간 하천에 교각 등 설치시 하천수질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을 제시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한 주민의견 수렴 실시

4. 기 타

- 노선주변 주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계획 수립
- 절·성토사면을 최소화 및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안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시 현황조사 철저 및 주변사업 등 문헌조사 자료 최대한 활용

2020. . 11.

심의위원 :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귀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이○○(협의기관)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 **총괄 의견**

- 본 계획노선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일원을 연결하는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로 아래의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동 계획의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등) 부합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 실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기존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을 예측·검토하고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의 위치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대안

- 계획의 목적, 주변 토지이용상황, 입지 여건 및 환경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와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각 대안별 선정 사유와 최종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인근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등) 등을 고려하여 대기,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노선 선정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고, 조사 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를 반드시 수록·제시
-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이○○(협의기관) ②

-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이 겨울철새도래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법정보호종 등 종별, 계절별 조사가 필요하며,
 - 생태축 단절지역에 야생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방안 검토·제시
- (대기질, 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포함),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노선내 터널이 계획된 바, 터널 공사로 인한 사업지역의 발파 소음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
- (수질, 지하수) 터널폐수, 토사유출,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및 하류 수계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장대 및 일반교량 설치 시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검토·제시
 - 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 흐름에 미치는 영향, 터널 내 지하수 발생으로 인한 영향 등 예측 및 저감방안 등 제시
- (경관) 계획노선 내 다수의 교량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사업시행 시 질·성토 사면 및 교량설치 지역 등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경관영향을 예측(경관시뮬레이션)하고,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

- 문헌자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시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의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0. 11. 20.

심의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이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김○○(사업지역 관할 지방환경관서)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 총괄의견

-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동 계획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계획구간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노선 해당지역 및 주변의 지형, 수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 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참고

2.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

- 노선계획 수립 시 계획노선의 지형 및 주변 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되어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생태계 및 생태·녹지축, 주요 수계, 자연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제시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기준도로 활용, 노선 우회, 터널 설치 및 터널을 설치할 경우 입·출구부 위치 조정 등) 다각도로 검토
 - 도로 개설로 인한 지형훼손 및 생태계 단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 선정·제시
 - 원지형 및 기존노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및 정온 시설 등에서의 조망에 따른 경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 선정·제시
 - 과도한 지형변화 및 절·성토 사면 발생에 따른 생태·경관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절·성토 사면 조성 및 복원 계획 수립·제시 등
 - 절·성토 사면 발생구간, 구간별 적용공법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지형·경관 훼손 등 최소화 방안 강구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김○○(사업지역 관할 지방환경관서) ②

- 해당 계획의 성격,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3가지 이상의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해당 지역의 교통량 현황, 장래 교통량 추정, 분담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존도로의 활용, 도로의 신설, 주변도로 연계 등 다양한 대안을 설정
 - 도로의 기능과 통과지역의 여건, 지형적 조건, 교통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표준설계속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대안(-10 km/hr, -20 km/hr)을 설정
 - 각 대안별 비교를 통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도로사업은 긴 구간을 따라 연결망을 구축하는 선형사업으로, 복합적인 입지에 걸쳐 조성되어 일부 구간에 대해 지형변화가 유발되므로 이에 따른 식생 훼손, 생태계 단절, 수질·대기질 오염부하 가중, 소음·진동 등 영향이 예상된다.
 - 절·성토 발생구간에 대한 지형변화, 식생훼손 등의 검토를 위한 현황조사 결과 및 과도한 훼손,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구간은 대안 등을 검토·제시
- 계획노선 내 하천이 있을 경우(인근에 위치한 경우도 포함) 관련 수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면 등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천 내 구조물 설치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수질 및 수리·수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정온시설 근접 구간에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및 소음·진동 등 영향여부 제시 및 당해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대책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4. 기 타

- 노선의 신설 및 확·포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도면·표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자연생태환경분야의 광역조사 시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5년간)를 활용하되,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2020. 11. .

원주지방환경청 심의위원 김

-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문○○(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안 건 명 :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심의의견서

1. 대상지역 및 대안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 선정된 계획노선에 대한 변경이 어려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여타 대안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사업시행시 북한강 및 상수원에 대한 수질변화 예측이 필요하며, 환경적인 피해 등이 예상되는 주요항목별 대상지역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초안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하고,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평가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4. 기 타

○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지역으로 개발부하량 범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배출부하량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삭감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발생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비산먼지에 대하여 세륜·세차시설 운영, 살수 시설 설치 등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 하여야 함.

2020. 11.

심의위원 : 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귀하

- 가평군 환경과 이○○(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 안건명 :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심의의견서

1. 대상지역 및 대인의 설정

- 대인별 검토사항 중 “나. 입지” 검토와 관련, 기술적 측면에 있어 대안별 IC 설치 계획에 지방도와 연계 계획이 미흡하니, 지방도364호선 도로와 IC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여 교통량 분산 등을 통해 본 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 흐름 개선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본 도로 개설로 인하여 남양주 ~ 춘천간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가평읍 ~ 북면간 교통 환경은 개선이 불가하므로 본 도로개설과 관련 가평읍 ~ 북면간 교통여건 개선방안 검토 요망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평가항목 선정안에 산업항목이 제외되었으나, 본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주민 생활권을 우회하는 도로이며, 도로구간 대부분이 가평군 관할구역에 해당되는 등 도로 개설로 인하여 가평군의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평가항목에 산업항목 추가 검토 요망
-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항목 검토 시 공사 시와 도로 운영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공람장소는 해당 시·군의 본청 및 읍·면·동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에 대한 평가서 초안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이 용이하도록 조치 요망

4. 기 타

- 평가서 환경관련 지구 및 지역지역 현황 작성과 관련, 가평군 “상면”이 “상동면”, “조종면”이 구 “하면”, “청평면”이 구 “외서면” 등으로 표기된 사례가 있으니, 현황 자료에 대한 현행화(정정) 요망

2020. 11. 27.

심의위원 : 가평군 환경과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귀하

- 춘천시 환경정책과 박○○(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①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안 건 명 :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심의의견서

1. 대상지역 및 대안의 설정

- 제2경춘 국도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계획노선 선정을 위한 총 3안의 대안 검토사항에 춘천 구간은 노선의 변동이 없음.
- 계획노선의 춘천구간은 일부분을 제외하고 국토환경성평가등급과 생태자연도 등급이 I 등급에 해당되므로, 높은 생태보전가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봄.
- 따라서 춘천시 구간에 대한 대안을 추가로 검토하여 대안노선별 터널 입·출입구, 교량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분석·제시하는 등 단절이 예상되는 생태네트워크 및 생물군 등에 대한 분석 및 최적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점평가 항목과 환경영향평가의 중점평가 항목을 일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범위를 구체화하시기 바람.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별도의견 없음.

4. 기 타

- 계획된 노선의 터널구간의 경우 지하수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지의 타당성 검토 시 유출지하수에 따른 지하수시설 및 수계영향을 고려하고, 중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영향구간(시설)을 사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춘천 구간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 수질오염

- 춘천시 환경정책과 박○○(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②

총량제가 시행되므로, 터널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사업 시행 시 비점오염원 유입에 따른 하천 수질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춘천 구간에 터널 설치로 인한 경관변화가 예상되므로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경관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마련·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020. . .

심의위원 :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귀하

○ 중앙대학교 한○○(민간전문가)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안 건 명 :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심의의견서

1. 대상지역 및 대안의 설정

비교안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내용을 사진 제시 필요
-예, 자연보호구역은 피해야 한다. 기존 취락지구 및 음용수 취수지역주변 000 m이내 금지 등
대안검토안의 특징에 대비하여 장단점을 BC분석등 정량적 표현 추가 필요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지질 및 지형에서
-지질특성에 따른 공사중 토양오염의 누출등 연계검토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의견수렴계획은 단계별 필요시점을 정기적으로 제시

4. 기 타

2020. 11 . 19 .
심의위원 : 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귀하

○ 한국기술개발(주) 정○○(민간전문가)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안 건 명 :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심의의견

1. 대상지역 및 대안의 설정

○대안 설정시 “4.3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p27)”에 대한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환경입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람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평가항목 선정

- “6.2 평가항목의 선정(p80)”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동시에 검토하고자 하였는 바,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 작성시 선정된 평가항목을 토대로 구체적인 작성 목차를 계획하기 바람

○평가범위 설정

- 계획노선 북동측의 겨울철새도래지(소양호 하류) 및 남서측의 겨울철새도래지(상수-팔당댐)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평가 대상범위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당초: 500m 설정 범위 확대, 철새도래지 인근 겨울철 조류조사 실시 필요)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실시

- 설명회, 공청회 개최시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바람
-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실시하기 바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관리지침 참고

4. 기 타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 계획노선이 생태자연도 1등급을 일부 저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생태자연도 및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 및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기 바람
- 계획노선과 인근하여 겨울철새도래지(소양호 하류, 상수-팔당댐)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철새 이동경로를 검토하고 영향예상시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조류충돌)

2020. 11. 26.

심의위원 : 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귀하

○ 남양주시 이○○(주민대표)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안 건 명 :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심의의견서

1. 대상지역 및 대안의 설정

-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3쪽의 그림 2-1): 지형/지질 관련, 교각 신설구간이 수중 지형에 미치는 영향 (침식 변화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평군 용담대교 신설 이후의 팔당호 큰섬 침식 증가사례 관련 사항)
- 입지 대안 (66-67쪽): 비교 1안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평가항목의 설정: 특이사항 없음
- 평가범위: 82~85쪽의 기술사항 외에,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지역 원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호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규명하여 평가범위에 반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특이사항 없음

4. 기 타

2020. 11. 16.

심의위원 :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귀하

○ 가평군 주○○(주민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 심의서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본 계획과 관련되는 상위계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획부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시 계획노선 주변 주거시설 및 축사 등의 정온시설과 수계 및 자연환경 등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하여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구역 내 생태자연도 1등급이 포함되는바 식생 및 자연환경의 훼손구역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선형계획수립이 필요함.
 - 본 계획노선 종잇부 일부구간이 겨울철새 도래지(북한강(청평댐-화천교))에 포함되는 바 공사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3. 대안
 - 각 대안별 장·단점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사업구역이 겨울철새 도래지에 포함되므로 동·식물상 조사시 동절기 철새조사를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함.
 - 평가항목 중 일조장려가 제외된 바 농경지를 통과하는 구간이 주변 농경지보다 10m이상 높게 계획될 경우 농작물에 대한 영향 검토를 위해 일조장해 평가항목 추가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6. 기타
 - 의견 없음.

2020. 11. 23.

심의위원 주

○ 춘천시 이○○(주민대표)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안 건 명 :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심의의견서

1. 대상지역 및 대안의 설정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4. 기 타

심의의견 1. 2. 3 항에 대한 종합의견은 환경적인 면에서의 주민생각은 큰 차이가 없거 같고 다만 남산전 방향 1리 지역 (홍봉산면 주민들까지 남산전 방향 2리 서천봉리)의 강소리와 주민들의 의견발생과 소음에 대한 의견은 들었음이라. 그에 환경영향평가타당조사하라는 남산전 2리 (백양리 서천 1리)에 각종입과 있었음 하도 의견주셨음이라.

2020.
 심의위원 : 이 [redacted]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귀하

○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시민단체)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 안 건 명 : 제2경춘(남양주~춘천) 도로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심의의견서

1. 대상지역 및 대안의 설정

·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구현.
· 지역균형발전, 공동농업농촌 등 최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훼손된 자연의 회복과 생태과연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

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입지 타당성 검토 중 자연환경 민감도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와
· 조사 요구됨
·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공로, 공상 계획이 이미 지역 내 적용한 바에 수렴이 필요함.

4. 기 타

· 발전을 원칙으로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 복원 추진이 필요함.
· 도로건설공사 관련 지역 주민 모두가 공유가능한 자연환경 보호 추구가 요구됨

2020. 11. 25.

심의위원 :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장 귀하